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2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현행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입국신고 내용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방역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5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소관 사업에 사육 중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재 방역본부는 ①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② 국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 예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전화 예찰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방역본부의 장 또한 입국신고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방역본부의 소관 사업 규정에 사육 중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를 추가 하려는 것으로,

전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제 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전화 예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역본부 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조제8항 중 방역본부장의 전화예찰 업무에 관한 내용은 현행 제5조제8항의 소독업무와는 다른 업무이므로 별도의 항에서 규정하는 등 법제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도 추가하고, 이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은 전화 예찰에 대한 시행 근거만 규정

하고 있을 뿐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가축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